

**2015년**

# **산업안전보건기본계획**

**2015. 3.10**

**산업안전국**

## Contents

---

### I

## 2015년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

|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|---|
| 1. 비전 및 추진방향 | 3 |
| 2. 개요        | 4 |
| 3. 추진 과제     | 5 |

### II

## 산업재해 현황 및 분석

|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최근 3개년 산업재해 분석 | 11 |
|-------------------|----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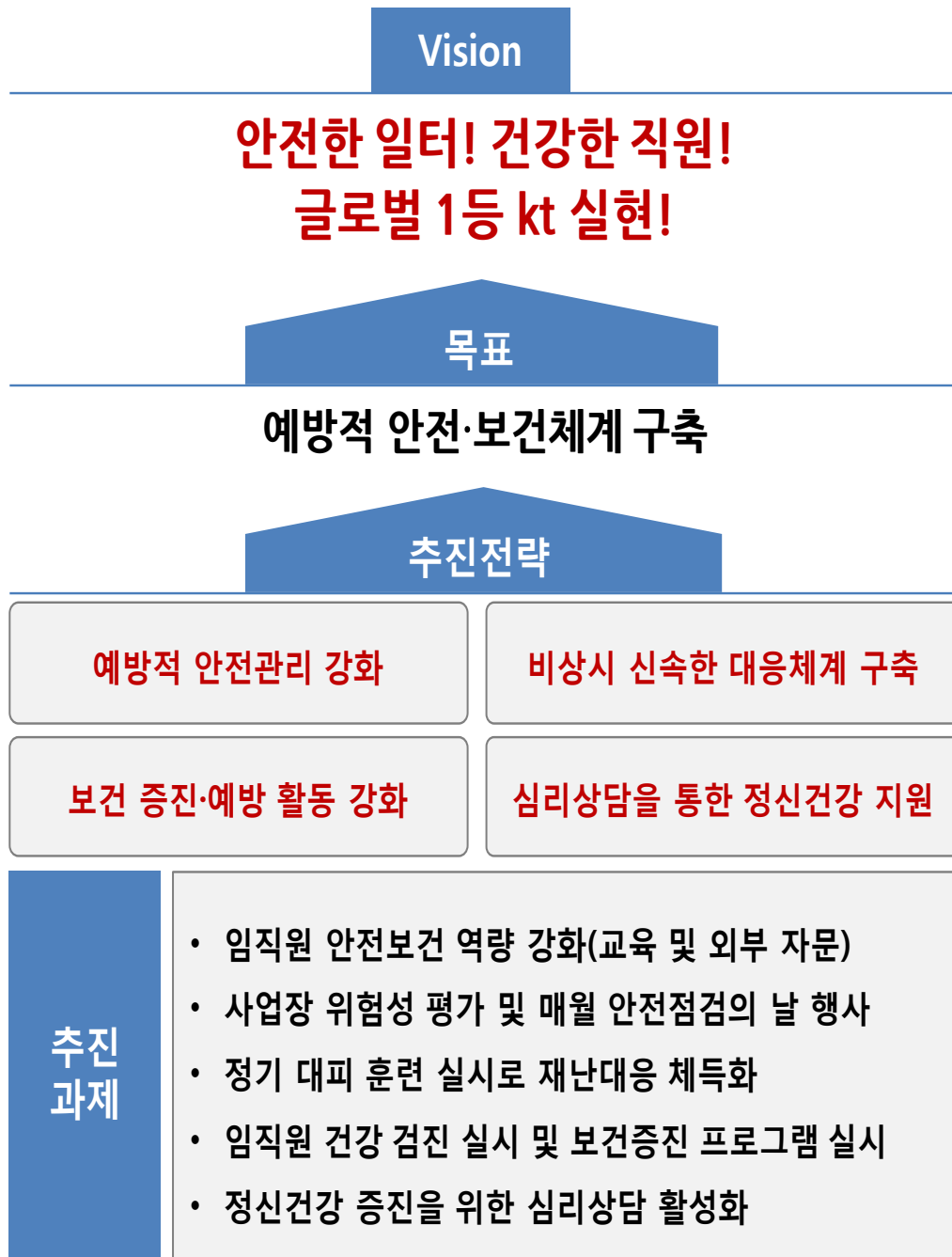
### III

## 별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             | 14 |
| 2. 업무상 재해발생시 보고 및 처리절차     | 15 |
| 3. 산업재해 조사표                | 17 |
| 4. 안전실천 약속·결의 선서문          | 19 |
| 5. 안전보건 교육 일정/내용           | 20 |
| 6.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일지           | 21 |
| 7. 현장부서/팀 무재해 4단계 안전활동(일일) | 23 |
| 8. 고용노동부 특감 시정지시 및 조치결과    | 24 |
| 9. 산업안전보건활동 주요 관리사항(서류 등)  | 25 |
| 9. 구내식당 위생 점검표             | 26 |

## I .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

### 1. 비전 및 추진전략



## 2. 개요

### 가. 배경

- 산업안전·보건에 대한 연도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을 정하고,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
-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으로 밝고 건강한 직장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

### 나. 수립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(사업주의 의무), 제6조(근로자의 의무)
-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(안전상의 조치), 제24조(보건상의 조치)
- 산업안전보건규정 제7조(안전보건관리계획 등)

### 다. 추진방향

- 평상시, 선제적 안전보건 예방활동 강화
- 비상시,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 구축
- 캠페인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전사 보건활동 강화
- 심리상담 활성화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

## 2015 년 안전보건 국내·외 동향

### ▶ 국내동향<sup>1</sup>

#### 1. 기업·근로자·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의 명확화

[원청사업자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, 위험작업 사전 허가제 도입, 중대재해예방 중심 정책전환 등]

#### 2. 산재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능력 강화 [안전망 등 설치 비용 지원 등]

#### 3. 법령·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Infra 구축 [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]

#### 4. 안전수칙이 실천되는 안전보건 문화 확산 [교육체계 구축,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등]

### ▶ 해외동향<sup>2</sup>

#### 1. ILO: 글로벌 안전보건 증진 활동 [산업안전보건 N/W 구성, 법률 DB 확충 등]

#### 2. EU: 유럽경제사회위원회, 『2014-20 산업안전보건추진전략』제언 [규칙간소화, 예방강화]

#### 3. 미국: 주당 10 억불 비용 야기하는 10 대 산업재해 보고 [과도한 힘, 전도, 추락 등]

#### 4. 일본: 정신건강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(참여사업장: '13 년 61% → '17 년 80%)

<sup>1</sup> Source: 고용노동부 '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('15.1.27)' <sup>2</sup> Source: 안전보건공단 '국제산업안전보건 동향 2015.1~3월'

### 3. 추진과제

#### 가. 안전보건 역량 강화

##### 【현장부서 『정기안전보건교육』 추진】

- 목적
  - 교육을 통하여 건강증진법 및 안전사고 예방 등 법령 의무사항 준수
- 교육대상: 현장 및 사업부서 쏘사원(순수 사무직 근무사육 제외)
- 주요내용
  - 운영기준 정립 및 교육대상자(튜터포함) 선발: 3월
  - 교육시행: 3 ~ 12월
  - 교육시간: 매분기별 6시간 이상

##### 【노무법인 자문계약으로 산업안전분야 전문상담】

- 배경: 관련법령(산업안전보건법 등) 오류 해석에 따른 Risk 최소화
- 대상: 삼정 노무법인(신항철, 전옥봉 노무사 / 02-521-3588)
- 기간: '15.1.1 ~ 12.31(1년간)
- 주요내용: 산업안전보건법, 산업재해/산재보상, 근로기준법 등 자문

##### 【제14회 산업안전보건대회(안전 Leader 세미나) 개최】

- 배경: 노사합동 마인드 확산 등 건강·보건정보 업무 공유 등
- 행사목적
  - 안전보건활동 성과 분석 및 금년도 사업계획, 중점사항 설명회
  - 우수안전활동 사례발표 등 정보교류의 장 마련
- 주요행사
  - 안전보건활동 성과분석, 외부 전문강사 특강, 안전 세미나(발표회 등)
  - 안전결의 선서문 낭독 및 안전보건/산재/노무관리 전문상담 등
- 시기: 6월(예정)

#### 나. 사업장 위험성 평가

- 배경: 사업장 유해·위험 요인의 사전발견을 통한 안전한 직장 구현
- 추진계획
  -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G/L 마련: 3월
  - 사업장 위험성 평가 담당 교육 및 프로그램 시행: 4월 ~

## 다. 매월 『안전점검의 날』 및 분기별 테마 행사 추진

### 【매월 『안전점검의 날』 행사 추진】

- 근거: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(안전점검의 날)
- 목적: 자율적인 안전점검 예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
- 시행부서: 지역고객본부, 지역NW운용본부 소속 현업부서
- 주요내용
  - 재난 취약시설 일제점검,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리 행사 실시
  - 각 분야별 시기별 점검과제 선정,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
  - 무재해기/무재해 기록판 일제정비, 개인보호구(안전모 등) 점검 등

### 【월별 주요테마 행사 추진】

- 주요내용

| 구분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Q | 해빙기 안전대책, 등주 작업 시 안전대책, 계절테마 등        |
| 2Q | 안전응급조치요령, 추락사고 예방대책,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등  |
| 3Q |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, 하절기 재해예방대책(밀폐공간 안전작업) 등 |
| 4Q | 교통사고 예방, 화재예방/소화기 사용법,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등  |

#### ※ 관련규정: 산업안전보건규정 제17조(안전점검)

- ① 기관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 자체 안전점검 실시
-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

## 라. 재난 대피 훈련 실시

- 목적
  - 화재 등 재난 대피 반복 훈련으로 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위기상황 시, 인명 피해 제로화
- 시행방안
  - 시기/대상: 연 3회(3월, 6월, 9월) / 직원 상주 쏘사옥
  - 훈련내용: KBN시청, 사전교육, 화재대피훈련, 심폐소생술 실습 등
  - 훈련결과 Comm.: 훈련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 및 보완

#### 마. 일반건강검진 시행

- 배경: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질병재해 예방  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(건강진단) 및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
- 대상/시기: 전 임직원 / 4 ~ 11월
- 조치사항
  - 검진결과 의사의 소견에 따른 치료 및 후속관리 시행
  - 보건관리자의 건강상담 등 지속적인 유소견자 관리
  -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(작업장소변경, 작업전환 등 적의조치)
- ※ 2차 검진(당뇨·고혈압) 대상자 필히 재검진 시행(과태료 부과대상)

#### 바. 보건증진 프로그램 실시

##### 【유해작업환경 측정】

- 배경: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현장의 건강장해 미연에 방지
- 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, 시행규칙 제93조,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
- 대상: 지역고객본부/NW운용본부 관리 통신맨홀(밀폐공간)
- 일정
  - 측정비용(예산) 소요 조사: 4월
  - 자원배정 및 작업환경 측정 시행: 5월
- 시행결과: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측정결과 보고(측정 후 1개월 이내)

##### 【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운영】

- 배경: 질식재해 등 유해작업장에 대한 사전 사고예방활동
- 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
- 대상: 지역고객본부 소속 지사/지점 CM팀
- 주요내용
  - 사업장별 유해장소 선정(해당 부서/팀)
  - 주기적 유해가스 측정으로 기록·보전 및 검출 시 개선계획 수립 이행
  - 하절기 등 장마철, 밀폐공간 질식재해관련, 집중 예방활동 강화
  - 밀폐공간 긴급구조 훈련 시행(반기 1회)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

### **【구내식당 위생관리로 건강한 사업장 구현】**

- 배경: 구내식당(집단급식소) 위생관리로 건강한 노동력 유지 증진
- 점검주기: 월 1회(식중독 위험지수 증가 시, 주1회 시행)
- 주관부서: 지역 고객센터, 지역 NW운용본부 등
- 위생점검: 반기 1회(경영지원실, 지역 고객센터/NW운용본부 합동시행)

### **【사업장 공생협력 프로그램 시행】**

- 배경: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 강화
- 대상: 100인 이상 사업장
- 내용: 협력사 작업장내 유해위험요인 발굴/개선, 위험성 평가 등 기술지원
- 일정
  - 계획(안)마련: 3월
  - 대상 사업장 시행: 4월 ~

## **사.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활성화**

### **【계열사 대상 심리상담 지원】**

- 배경: 감정근로직원들의 스트레스 조절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제공
- 추진방향
  - 팀상담: 팀내 소통 활성화로 팀 협업도 및 성과 향상 기여
  - 힐링캠프: 스트레스 완화/조절 교육을 통한 심리 안정화 기여
  - 찾아가는 심리상담센터: 선제적 예방 활동 및 직원 만족 강화
  - 교육: 스트레스 관리 및 직책자 리더십 교육
  - 해아림 편지: 전 계열사 임직원 대상(주 1회)

### **【직원 스트레스 검사를 통한 Risk 예방】**

- 배경: 전국 단위 심리상담 시스템 구축 및 스트레스 검사로 Risk 예방
- 추진방향
  - 기간: 연간 3회 실시(3월, 6월, 9월)
  - 대상: kt 전 임직원
  - 방법: on-line 접속을 통한 자가 체크(PC & Mobile)
  - 결과: 심리검사 후 즉시 개인메일로 결과 제공

## 아. 기타활동

### 【계절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별 안전보건대책 수립】

- 배경: 유해·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수립 및 시행
- 주관부서: 지역고객본부, 지역NW운용본부 등
- 시기: 해빙기, 체육행사, 하절기(구내식당 위생 등), 동절기(동상예방 등)

### 【현장부서 무재해 4단계 일일 안전활동 시행】

- 배경: 팀원간 일일 안전활동 시행으로 재해예방 등 안전팀웍 형성
- 시행부서: 현장부서 전체(지사, 센터 등)
- 주요내용
  - 1단계: 출근 후 현장부터 안전 3분 미팅
  - 2단계: 작업지시 및 개인 보호구 점검
  - 3단계: 현장 출동 전 위험 예지 활동
  - 4단계: 작업종료 및 정리정돈

### 【현장직원 대상 방진마스크 지급】

- 배경: 미세먼지로 인한 현장근무환경 악화 대비 직원 호흡기 질환 예방
- 대상: Customer부문, 네트워크부문 현장직원(ITE, CM, CS직 등)
- 방법: 지역 고객본부/NW운용본부별 예산한도 내 구매 및 배포

### 【질병 및 건강증진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자료(테마자료 등) 제공】

- 배경: 직원들의 건강증진 방법 및 건강에 관한 상식 안내
- 방법/시기: 방송 프로그램 및 SNS 등 유익한 교육자료 발취/제공 / 연중
- 주관부서: 경영지원실

### 【업무 표준 가이드북(업무 메뉴얼) 제작·배포】

- 배경: 업무표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업무 효율성 등 신속 업무처리(지원)
- 주요내용
  - 산업안전보건, 산재보상(재해보상 서식 표준화), 산업안전법령 등
  - 건강검진, 위생관리, 산재관리시스템 프로세스 운영 (설명)
  - 중대재해 발생시 처리지침 (신속한 재해수습, 서류준비 사항 등)
  -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 실태 점검 시 대응방안 등
- 일정: 5월 배포(예정)

### 【산업재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관련직 엄중문책】

- 배경: 자율적 재해예방 노력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
- 주요내용
  - 산재발생 사업장 List 전사 공개(상반기/연간 성과분석 시)
  - 공개내용: 지역 본부명, 사업장명, 재해원인, 재해건수·현황 등
  - 기본 안전수칙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직 엄중 문책
  - 우수활동 부서는 반기별 시상(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사례 취합)

### 【‘Safety 메시지’ 운영·발송】

- 배경: 악천후 대비 안전관련 문자 사전 발송으로 사고 예방
- 주요내용
  - OC문자(SMS)서비스를 활용하여 재해예방 문자 발송
  - 발송자: 지사장/센터장/현장팀장
  - 수신자: 현장사원(CS컨설팅팀, CM팀 등)
  - 발송시기: 폭염, 폭설, 폭우, 도로결빙, 태풍 등 기상특보 시

### 【아차사고 사례집 발간을 통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】

- 배경: 현장활동 안전의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안전마인드 고취
- 방법: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발표시간 삽입 (각 기관별 시행)
  - 지역 고객/NW운용 본부에서는 매달 우수사례 선정 후 경영지원실로 보고
- 주요내용
  - 사고 사례집 발간 및 배포(경영지원실)
  - 관련부서와 유해요인 개선 반영 및 작업 절차서의 지속 업데이트
- 기대효과: 사고에 대한 간접경험을 통한 유사 사고 미연에 방지

### 【안전·보건관리자 위탁대행기관 선정】

- 배경
  -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행
  - 직원들의 보건지도·상담 등으로 건강 유지증진 도모
- 대상: 50인 이상 사업장(순수 사무기관 제외)
- 업체선정: 산안법에 준하는 업체(산업안전지도사, 안전기술사 등 보유)
- 위탁계약: G/L설정(경영지원실), 개별계약(지사 단위급 사옥)
- 주요내용
  - 타 사옥 근무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·보건관리 강화(CS부, 운용센터 등)
  - 위탁대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행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
(분기별 테마점검 시행, 전문강사 특강, 현장 맞춤형 교육 시행 등)

## Ⅱ. 산업재해 현황 및 분석

### 1.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분석

#### 가.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

| 구분    | 근로자수<br>(a) | 합계<br>(b=c+d) | 사망(c) | 부상(d) | 재해율<br>(e = b/a) | 비고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2014년 | 23,777명     | 60명           | 1명    | 59명   | 0.25%            | 근로자<br>(계약직 포함) |
| 2013년 | 32,039명     | 60명           | 2명    | 58명   | 0.19%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2012년 | 32,267명     | 97명           | 2명    | 95명   | 0.30%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※ 동종업계 재해율<sup>3</sup>: 0.32% / 국내 전체 평균 재해율: 0.59%

#### 나. 최근 3년 분야별 재해 현황

| 분야별    |       | 현장작업  |    |    |    | 차량   |    | 질병   |    | 기타    |    | 합계 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-|----|-----|
|        |       | 주상    | 맨홀 | 택내 | 기타 | 차량   | 이륜 | 뇌심혈관 | 기타 | 체육행사  | 기타 |     |
| 총괄     | 2014년 | 19    | 2  | 11 | 10 | 4    | 0  | 1    | 0  | 9     | 4  | 60  |
|        | 2013년 | 26    | 0  | 20 | 1  | 3    | 0  | 0    | 1  | 4     | 5  | 60  |
|        | 2012년 | 33    | 4  | 35 | 2  | 6    | 0  | 1    | 1  | 8     | 7  | 97  |
| 재해자(명) |       | 78    | 6  | 66 | 13 | 13   | 0  | 2    | 2  | 21    | 16 | 217 |
| 분야별    |       | 163   |    |    |    | 13   |    | 4    |    | 37    |    |     |
| (비율)   |       | 75.1% |    |    |    | 6.0% |    | 1.8% |    | 16.1% |    |     |
| 재해형태별  | 떨어짐   | 58    | 0  | 29 | 5  | 0    | 0  | 0    | 0  | 0     | 1  | 93  |
|        | 넘어짐   | 14    | 1  | 19 | 2  | 1    | 0  | 0    | 1  | 17    | 7  | 62  |
|        | 끼임    | 4     | 3  | 9  | 1  | 0    | 0  | 0    | 0  | 1     | 2  | 20  |
|        | 부딪힘   | 1     | 0  | 2  | 3  | 7    | 0  | 0    | 0  | 3     | 1  | 17  |
|        | 기타    | 1     | 2  | 7  | 2  | 5    | 0  | 2    | 1  | 0     | 5  | 25  |
|        | 소계    | 78    | 6  | 66 | 13 | 13   | 0  | 2    | 2  | 21    | 16 | 217 |

○ '14년 업무상 재해건수는 전년과 동일하나, 4월 대규모 명퇴로 인한 인력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, 재해율은 상승(0.19% → 0.25%)

- 현장작업 중 떨어짐 · 넘어짐 사고의 예방개선 노력이 요구됨

○ 재해율은 평균 0.25%로 동종업계(0.32%) 대비 0.07%p 낮은 수준임

○ 중대재해: 추락 1건 발생(재해의 질은 개선)

<sup>3</sup> 『출처: 고용노동부(2013년)』

## 다. 최근 3년 분야별 재해 상세 분석

○ '13년 재해 60건으로 전년과 동일하나 재해율은 증가

- 현장인력의 연령은 낮아졌으나, (재해자 평균 '13년 47세→ '14년 44세)
- 현장작업 중 '주상/덤펀'의 안전사고가 66%로 재해 발생빈도가 매우 높음
- 주상/덤펀 작업 중 '추락·전도' 재해비율이 63%로 반복재해가 지속 발생
  - ※ 현장 떨어짐·넘어짐 재해건수: '12년 71건 → '13년 46건 → '14년 38건
  - ☞ 원인은 불안정한 행동(53%): 안전수칙 준수/안전행동 습관화 필요
  - ☞ 무재해 일일 안전활동 '필히' 시행 (CS컨설팅팀, CM팀 등)

○ 재해 중 현장의 떨어짐·넘어짐은 감소 추세('12년 73%→'13년 77%→'14년 63%)

- 안전불감증, 조급증 등 대부분 『인재사고』로 주기적인 반복교육 필수
  - ☞ '개인 보호구' 중요성 강조: 사망 → 중상 → 경상 → 아차사고
  - ☞ 하인리히의 재해법칙 1 : 29 : 300 (1건의 사망은 29건의 부상, 300건의 아차사고)
- 매월 안전행사 내실 운영, 정기적인 안전교육, 관리자 재해예방 관심 제고
- 고객본부/NW운용본부의 체계적 안전보건활동 강화로 안전사고 감소 추세
  - ☞ '15년은 『현장 다발성 재래 재해 방지』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.
  - ☞ 타 사업장 우수활동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장 안전활동 개선 시행

○ 체육행사 중 재해가 다수 발생('12년 8건→ '13년 4건→ '14년 9건)

- 주요원인: 개인 부주의(불안정한 행동) 등
  - ☞ 체육행사 시 문화행사 권고로 체육행사 중 사고 예방 필요

## 라. 최근 3년 지역별 재해율 현황

| 구분  | 강북   | 강남   | 서부   | 부산   | 대구   | 전남   | 전북   | 충남   | 충북   | 강원   | 제주   | 기타  | 합계  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
| '14 | 8    | 6    | 10   | 5    | 3    | 2    | 3    | 3    | 2    | 1    | 3    | 14  | 60   |
| '13 | 10   | 6    | 5    | 4    | 5    | 7    | 2    | 6    | 4    | 3    | 4    | 4   | 60   |
| '12 | 12   | 5    | 12   | 13   | 10   | 14   | 8    | 10   | 5    | 4    | 1    | 3   | 97   |
| 합계  | 30   | 17   | 27   | 22   | 18   | 23   | 13   | 19   | 11   | 8    | 8    | 21  | 217  |
| 평균  | 10.0 | 5.7  | 9.0  | 7.3  | 6.0  | 7.7  | 4.3  | 6.3  | 3.7  | 2.7  | 2.7  | 7.0 | 72.3 |
| 재해율 | 0.51 | 0.29 | 0.65 | 0.42 | 0.53 | 0.86 | 0.79 | 0.55 | 0.96 | 0.55 | 1.21 |     |      |

※ 대다수의 업무상 재해가 지역고객본부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역고객본부만을 비교

○ 최근 3년 평균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고객본부 순

- 제주 > 충북 > 전남 > 전북 > 수도권서부 순

※ 재해율 산정기준: 본부 총 인원 대비 업무상 재해건수 평균(최근 3년)

○ 14년 재해율 기준

- 제주 > 서부 > 전북 > 충북 > 수도권강북 순

## 마. 최근 3년 월별 재해율 분석

| 구분  | 1월  | 2월  | 3월  | 4월  | 5월  | 6월  | 7월  | 8월  | 9월  | 10월 | 11월 | 12월 | 합계  |
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'14 | 1   | 4   | 9   | 7   | 5   | 5   | 4   | 4   | 6   | 5   | 6   | 4   | 60  |
| '13 | 8   | 5   | 4   | 9   | 5   | 3   | 7   | 2   | 4   | 7   | 3   | 3   | 60  |
| '12 | 2   | 12  | 4   | 11  | 7   | 2   | 6   | 11  | 17  | 9   | 6   | 10  | 97  |
| 합계  | 11  | 21  | 17  | 27  | 17  | 10  | 17  | 17  | 27  | 21  | 15  | 17  | 217 |
| 평균  | 3.7 | 7.0 | 5.7 | 9.0 | 5.7 | 3.3 | 5.7 | 5.7 | 9.0 | 7.0 | 5.0 | 5.7 |     |

○ 최근 3년 업무상 재해(건) 가장 높게 발생한 월 세부현황

- 4,10월: 춘추계 체육행사 중 사고발생(스트레칭 등 필요)

- 2월: 해빙기 및 인사이동 기간으로 조급증(안전수칙 미준수) 등

- 9월: 자연재해에 따른 민원 고장수리의 무리한 복구작업(주말/야간 등)

【붙임 1】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(산업안전보건법 제 11 조)

## 산업안전보건법 이것만은 알아둡시다

| 번호 | 산업안전보건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제 10 조(보고의무)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3 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<br>1 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, 직원은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<br>제출(시방 등 중대재해 발생시엔 지체없이 산업안전과에 전송 또는 전화 보고)<br>※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외에도 동일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3 년 보관 |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제 11 조(법령요지게시)                      | ○ 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만원 이하<br>과태료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제 12 조(안전표지의 부착 등)                  | ○ 사업장의 위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, 비상시조치 안내 등의<br>안전, 보관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<br>※ 경고표지(인화성물질 등) 시행규칙 별표 1 의 2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개소당 10 만원<br>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제 15 조(안전관리자)<br>제 16 조(보건관리자)      | ○ 상시근로자 50 인 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, 보건관리자 선임<br>(지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)<br>※ 수급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사임 기간에<br>따라 300 만원,<br>500 만원 과태료                |
| 5  | 제 23 조(안전상의조치)                      | ○ 기계, 기구 기타 설비(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), 폭발성, 발화성, 인화성물질,<br>전기,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년 이하의 징역<br>또는 5 천만원<br>이하의 벌금                   |
| 6  | 제 24 조(보건상의조치)                      | ○ 분진, 밀폐공간 작업 사무실 오염, 소음 및 진동, 이상기압, 온, 습도, 방사선,<br>근골격계 부담 작업, 관리대상 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<br>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년 이하의 징역<br>또는 5 천만원<br>이하의 벌금                   |
| 7  | 제 31 조(안전, 보건 교육)                   | ○ 정기교육 : 생산직(매월 2 시간), 사무직(매월 1 시간), 관리감독자(연간 16 시간)<br>○ 채용시 교육 : 건설업 이외의(8 시간 이상), 건설업(1 시간 이상)<br>○ 특별교육 : 건설업 이외의(16 시간 이상), 건설업(2 시간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만원 과태료<br>(횟수 또는 인원에<br>따라 차등 부과)              |
| 8  | 제 33 조(위해, 위험 기계, 기구<br>등의 방호조치 등)  | ○ 프레스, 전단기, 가스집합용 접장치, 크레인, 승강기, 리프트, 교류아이스용접기,<br>압력용기, 보일러, 롤러기, 연삭기, 목재동그륜, 동력식수동대패, 산업용 로봇 등은<br>방호장치 (지체한 내용은 아래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년 이하의 징역<br>또는 5 천만원<br>이하의 벌금                   |
| 9  | 제 34 조(안전인증)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롤러기, 고소작업대 등은<br>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, 기구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<br>(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도록 해야 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<br>2 천만원 이하의<br>벌금                   |
| 10 | 제 36 조(안전검사)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(2 톤 이상), 리프트, 압력용기, 곤돌라,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<br>원심기(산업용),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,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, 롤러기, 사출성형기 등은<br>주요 안전검사 실시 (20 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실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만원 이하의<br>과태료(1 대당<br>10 만원 또는<br>20 만원)       |
| 11 | 제 38 조(제조등의허가)<br>제 38 조의 2(석면조사) 등 | ○ 디올로라벤자딘, 알파나프틸아민, 크롬산아연, 베릴륨, 비소 등 허가대상물질을<br>제조, 사용하려는 경우 노동부 지방관서에 허가 신청<br>○ 일정 연평균 이상의 건축물, 설비를 해제하려는 자는 동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 석면<br>조사를 실시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년 이하의 징역<br>또는 2 천만원<br>이하의 벌금                   |
| 12 | 제 41 조(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,<br>비치 등)         | ○ 물질, 화학물질을 함유한 재질을 제조, 수입, 사용, 운전, 저장할 경우 물질안전보건<br>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<br>○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,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<br>○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만원 이하의<br>과태료(정도에<br>따라 300 만원,<br>500 만원 구분)  |
| 13 | 제 42 조(작업환경측정)                      | ○ 분진, 화학물질 및 소음[80dB 이상 소음]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<br>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(6 월에 1 회 이상, 2 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 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만원 이하의<br>과태료(누락정도<br>따라 100 만원,<br>500 만원 구분) |
| 14 | 제 43 조(건강진단)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 년에 1 회, 비사무직은 1 년에 1 회<br>○ 특수건강진단 소음, 분진, 화학물질 노출 근로자(작업환경측정을 하는 사업장이<br>해당되며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다름, 1 년 또는 2 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천만원 이하의<br>과태료(근로자<br>1 인당 20 만원)                |

【붙임 2】

## 업무상 재해 발생시 보고 계통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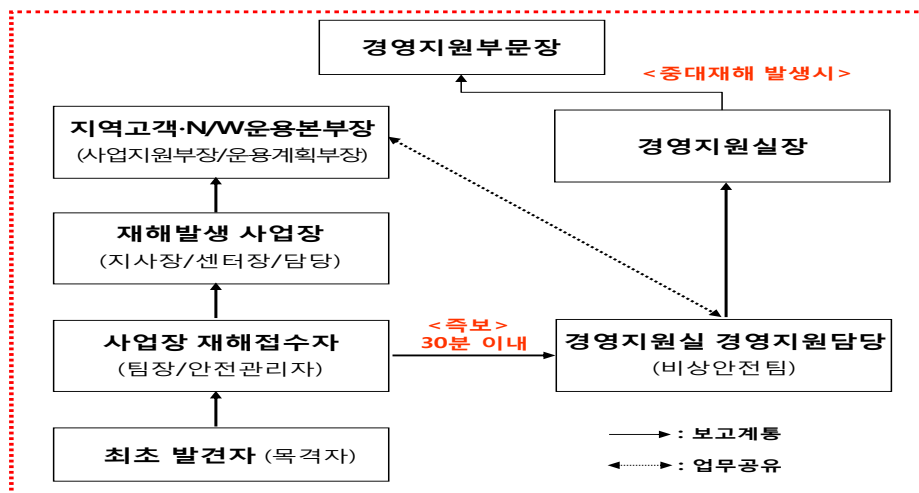
### □ 보고의 목적

- 각종사고 발생 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·정확하게 처리
- 원활한 업무수행, 대내·외 회사 이미지 실추 방지(외부감독기관 대응 등)
  - ※ 지역본부(네트워크운용단 등) 사고수습 대책반 구성 및 안전조치 확인

### □ 사고의 정의

- 인적 피해: 업무 중 사고에 의한 직원의 부상, 사망, 장애 또는 질병
  - 인적 재해 중 중대재해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)
    -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
    -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
    -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
- ☞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즉시 보고(전화 등)

### □ 업무상 재해 보고 계통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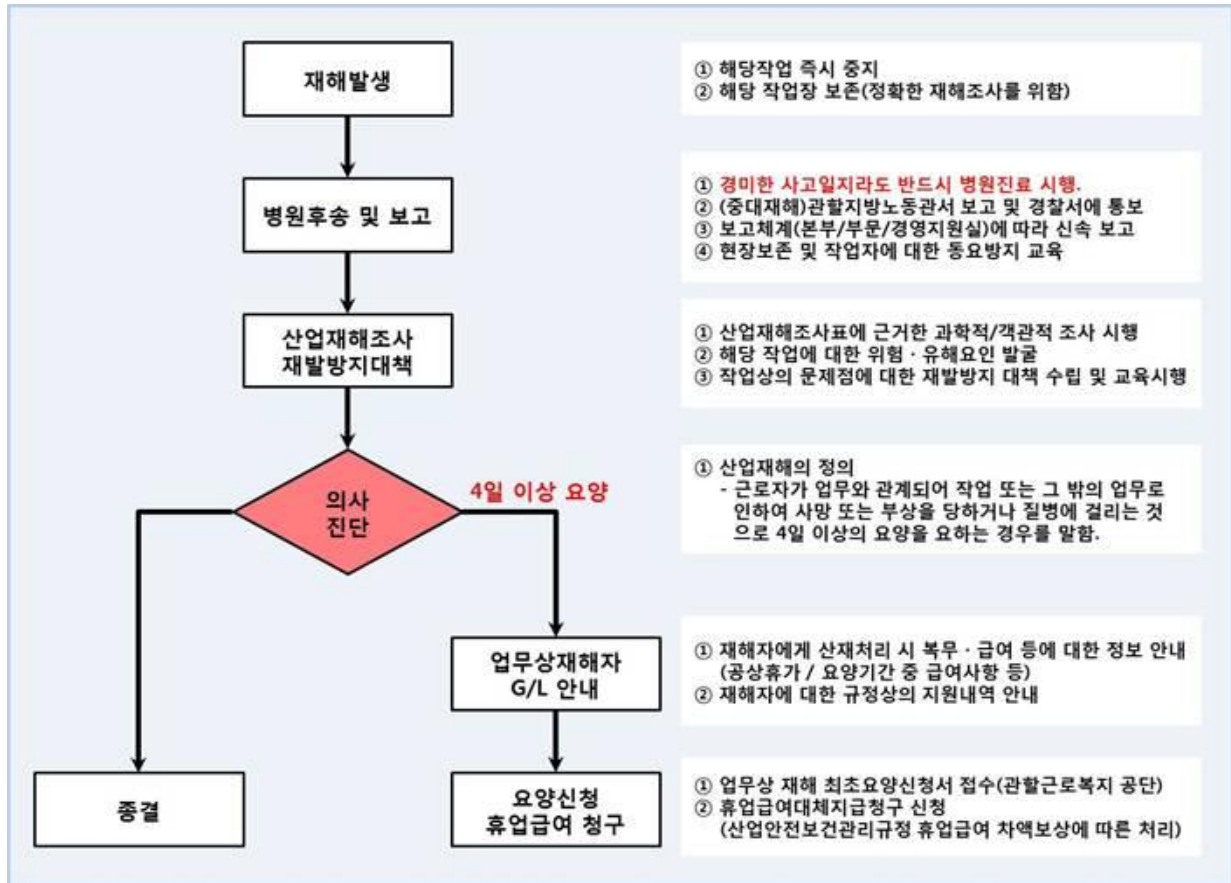


### □ 업무상 재해 보고 시 유의사항

- 지역고객본부/NW운용본부 담당자 부재 시 대무자 지정(지원팀장 등)
  - 재해 사고 후 이상 징후(재수술, 건강 악화 등) 발생 시 즉시 보고
- ☞ 중대재해시에는 문자로 신속·간략하게 즉시 보고(인적사항, 장소, 경위 등)
- ※ 업무상 재해 경위서(사업장 작성), 확인사항(고객본부/운용본부 작성)

## 업무상 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도

### □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 방법



### □ 산업재해 발생시 참고사항

- 서류 3부: 근로복지공단, 병원, 소속기관 각 1부 보관
- 근로복지공단 제출서류는 민원실에 제출 (노동관서 보고는 산업안전과)
- ☞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최초 요양신청서는 필히 1개월 이내 제출
- 재해자 관련 보존자료
  - 사망 또는 중대 재해 시: 현장보존 (조사 시까지)
  -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
  - 피해자, 목격자, 가해자 인적사항 파악 및 진술서
  - 채용관련서류(작업일지, 인사기록카드, 급여대장, 근무상황카드 등)
  -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(사망시) 확보 등

【붙임 3】산업재해 조사표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 1 호 서식)

## 산업재해 조사표

※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, 위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항목의 ' [ ]'란에 '√'표시를 합니다.

(제 1 쪽)

관리(산재)번호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사업체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개시번호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사현장명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사명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업종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로자수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생산물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장구분                  | [ ]원·도급 [ ]1 차 수급 [ ]2 차 수급 [ ]그 밖의 사항(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설업만<br>기 재            | 원·도급업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공사 종류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정률                    | 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사 금액        | 백만원   |
| 재해발생<br>개 요            | 발생일시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해 발생 지역(부서) |       |
| 재해발생<br>피 해            | 인적 피해 사망 ( )명, 부상 ( )명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물적피해 천원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업정지일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
| 재해 발생<br>과정<br>및<br>원인 | 재해원인물체·물질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재해 유발 공정 및 내용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재해발생과정<br>및<br>원인의 기록  | ※ 재해 관련 취급설비, 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상황과 당시 작업자(또는 재해자)의 행동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함 - 육하원칙(언제, 누가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)에 따라 작성함 |              |       |

### 재발 방지 계획

※ 유사 동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작성 및 시행할 것. (반드시 별지 사용)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산업재해<br>내 용 | 발생시점          | [ ]정규작업 [ ]식사·휴식 [ ]작업 전 [ ]출퇴근<br>[ ]휴일근무 [ ]시간외근무 [ ]그 밖의 사항( )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수행작업<br>공정·내용 | 평상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재해당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발생형태          | 가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상해 종류(질병명)                    | 상해 부위(질병 부위)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작업형태          | [ ]단독<br>[ ]복수<br>( 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호설비 | [ ]대상<br>[ ]비대상<br>(설비: )     | 개인방호장비 [ ]대상<br>[ ]비대상<br>(설비: ) |
|             | 근로손실          | [ ]사망 [ ]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[ ]재해 당일 계속 작업 [ ]재해 당일 작업 불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출근하지 못한 일수  |               | 작업 제한을 받은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(서명 또는 인)

(서명 또는 인)

【붙임 4】

## 안전실천 약속 · 결의 선서문

나는 내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 
내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 
내 사업장의 안전과 편안한 일터 구현을 위하여

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“**기본 원칙 실천**”을  
성실이 이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,  
다음과 같이 선서한다.

하나, 나는 항상 안전을 생활화하고 원칙과 기본을 철저히 준수한다.

하나, 나는 나 자신과 동료들 모든 위험과 유해로부터 기필코 보호한다.

하나, 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편안한 직장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하나, 안전사고 예방은 나와 회사에 중추적인 업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 
무재해 운동에 앞장선다

2015 년 00 월 00 일

00고객본부    00지사    선서자 대표    0 0 0

## 【붙임 5】사업장 안전보건 교육일정/내용

### □ 교육과정

#### ○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(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관련)

| 교육과정           | 교육대상           | 교육시간       | 비고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정기교육           | 현업 전직원(보직자 제외) | 분기 6시간 이상  | 이러닝 |
| 관리감독자 교육       | 현업팀장           | 연간 16시간 이상 | 이러닝 |
|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|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| 신규 6시간 이상  | 위탁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보수 6시간 이상  | 위탁  |
|                | 안전관리자          | 신규34시간 이상  | 위탁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보수24시간 이상  | 위탁  |
|                | 보건관리자          | 신규34시간 이상  | 위탁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보수24시간 이상  | 위탁  |
| 채용 시 교육        | 일반직원           | 8시간 이상     | 발생시 |
|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   | 일반직원           | 2시간 이상     | 발생시 |
| 특별교육           | 밀폐공간작업자        | 16시간 이상*   | 발생시 |

※ 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 실시 가능

### □ 교육내용

#### ○ 직원 등에 대한 교육내용(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)

| 교육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기안전<br>·<br>보건교육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</li> <li>•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</li> <li>•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</li> <li>•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</li> <li>•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리감독자교육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작업공정의 유해·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</li> <li>•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.</li> </ul> |
| 채용시 교육<br>·<br>작업내용변경시<br>교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        |
| 특별교육<br>(밀폐공간)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【붙임 6】

# 안 전 보 건 교 육 일 지

|   |    |    |    |
|---|----|----|----|
| 결 | 담당 | ○○ | ○○ |
| 재 |    |    |    |

| 사업내<br>안전보건교육<br>(산안법시행규칙<br>제33조제1항관련) | 정기교육( 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채용시(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업내용변경시(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교육(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무직           | 사무직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용근로자_1시간 이상<br><br>일용근로자를 제외한<br>근로자_8시간 이상 | 일용근로자_1시간이상<br><br>일용근로자를 제외한<br>근로자_2시간 이상 | 별표8의2제1호라목<br>각 호의 어느 하나에<br>해당하는 작업에<br>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<br>제외한 근로자_16시간<br>이상 (최초 작업에<br>종사하기 전 4시간<br>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<br>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<br>실시가능)<br><br>단기간 또는 간헐작업_<br>2시간 이상.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분기<br>3시간 이상 | 판매업무에 직접<br>종사하는 근로자_<br>매분기 3시간 이상<br><br>판매업무에 직접<br>종사하는 근로자<br>외의 근로자_<br>매분기 6시간 이상<br><br>관리감독자 지위에<br>있는 자_<br>연간 16시간 이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 분           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 미참석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 대상자 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 실시자 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실시자<br>및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           | 직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안전보건교육 참가자 현황

□ 교육일시 :

**□ 표 부 명 :**

[illegible]

【붙임 7】 현장부서/팀 무재해 4 단계 안전활동 (일일)

□ 대상부서: CM팀, CS컨설팅팀

**1단계 : 현장부서 안전3분 미팅**

- 아침 인사와 함께 동료 상호간에 건강 체크
- 현장 출동전 안전3분(기상특보시) 미팅으로 안전불감증 사고 예방
  - 지역별 당일 일기상황 등 안전교육 시행
    - ☞ 폭설, 강풍, 도로결빙, 안개 등 전일 사건사고 News 공유
- olleh 체조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실시 (자율적)



**2단계 : 작업지시 및 보호구 점검**

- 팀장/조장은 금일 작업에 대한 내용, 목표량, 작업장소, 작업방법, 작업순서 등 역할분담 및 반드시 확인
- 동료와 함께 개인보호구 점검 (안전모/턱끈/안전화/방한복 단추/명찰 등)

**3단계 : 현장 출동전 위험예지활동**

- 금일 실시해야 할 작업에 대한 위험예지 활동 실시
  - 위험 포인트 체크(외부요인 : 폭설/기상 등, 기타요인 : 조급증 사고 예방)
    - ☞ 특히, 지장이전 등 위험작업 시행시 외부여건(지형, 기상 등) 필히 확인 점검
- 출동전 단체 구호 제창 ( 예 :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안전 제일! )

**4단계 : 작업종료 및 정리정돈**

- 작업환경 주위 정리정돈 실시 (개인보호구/작업 공구 등 정리)
- 조별 종료 '터치앤드콜' 실시 (예 : 오늘도 안전 무재해, 좋아 좋아!)
- 작업수행에 대한 일보 작성 (아차사고 등 발생시 체크하여 익일 공유)

**【붙임 8】 고용노동부 특감 산업안전보건 (시정지시·조치결과 등)**

**□ 과태료 부과·현황 (조치결과 등)**

| 법조항  | 과태료 부과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치 결과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태료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태료 부과 원인                 | 조치 사항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제38조 | 50㎡(15평) 이상 철거 작업시 석면조사 미 실시 (공사:26건) | 신설법령 인지 미흡<br>공사 예산 절감    | 공사계약 조건 명기<br>담당부서 석면 교육 | 약1억원   |
| 제31조 |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시행<br>(법적 매월 2시간 이상)        | 법인지사 교육 미시행<br>(사무직 간주)   | 법인지사 교육 시행<br>(2012.3월~) | 약4천만원  |
| 제43조 | 건강검진 미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차검진 미시행시<br>(과태료 부과 미인지) | 검진 독려<br>정기 교육 시행        | 약7천만원  |
| 제10조 | 산업재해 보고(1개월 이내)<br>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| 신설법령 인지 미흡<br>관리자 교육 미흡   | 신설법령 적극 안내<br>관리자 교육 시행  | 약6천만원  |
| 제15조 | 안전/보건관리자 미선임<br>(50인이상 사업장)           | 법령 해석 차이<br>(노동부 근로감독관)   | 선임<br>(본사는 미해당)          | 약4천만원  |
| 제19조 |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<br>(100인이상 사업장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최<br>(본사는 미해당)          | 약2천만원  |
| 제36조 | 곤도라 안전검사 미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정검사일정 인지부족               | 전문업체 선정                  | 5백만원   |
| 제41조 |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| MSDS 현행화 미흡               | MSDS 자료 배부               | 1천5백만원 |
| 제30조 |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사원가 절감                   | 공사계약 조건 명기               | 1천7백만원 |

**□ 세부조치 결과 (시정지시 등)**

| 법조항  | 시정지시 (시정명령 등)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치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상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제43조 | 전력요원 축전지실 출입자 특수검진 미시행               | 축전지실 단시간작업으로 특수검진 명확히 제외(노동부 협의 완료/2.20)   | 사업지원부    |
| 제23조 | 청사내 전원분전반 안전조치 미흡                    | 안전2중 커버 부착 등 절연저항 측정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제24조 | 중량물 취급 계획서 미작성<br>크레인차량 운영 계획서 미작성   | 중량물(차량) 운영 계획서 작성<br>(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확보)      | 현업<br>지사 |
| 제24조 |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미준수                    |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교육<br>(경지2012-257 현업부서 문서안내) |          |
| 제31조 |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시행                     |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시행<br>(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프로그램 활용)    |          |
| 제41조 |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담당자 교육 미시행            |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교육 시행<br>(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자료 활용) | 분당<br>사옥 |
| 제23조 | 옥상층 엘리베이터 조속기실 안전조치 미흡               | 조속기실내 와이어 안전덮개<br>(안전커버) 조치 완료             |          |
| 제24조 |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<br>유해요인조사 미시행            | 2013년 정기 조사후에<br>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제출(예정)         | 구내<br>식당 |
| 제24조 | 구내식당 도시가스 정전기발생<br>조치미흡 및 방수형콘센트 미사용 | 도시가스배관 접지 전위차분당 설치<br>일반콘센트→방수형 전체 교체      |          |

**【붙임 9】 산업안전보건활동 주요관리 사항 (서류 등)**

| 구분             | 주요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1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2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령             | ○ '산업안전보건법' 게시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법령사항 등                 | 100 인 이상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'안전보건관리규정' 게시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합문서 kt Legals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'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'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기별 작성                    | 100 인 이상                   |
| 관리<br>책임<br>자  | ○ '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' 비치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정서(자체관리)                 | 지사장<br>(100 인 이상)<br>3 개월내 |
|                | ○ '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'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안전보건공단(6H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' 비치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정서(자체관리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             | ○ 신규채용시 안전보건교육(8H)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이버교육                     | 인재원 신설(예정)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정기안전보건교육(월 2H)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이버교육                     | 순수 사무동<br>사옥(제외)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유무<br>(년 16H 이상 또는 반기 8H 이상)     | 사이버교육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'특별안전보건교육' 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체교육(16H)                 | 밀폐공간<br>맨홀작업               |
| 재해             | ○ '요양신청서' 제출유무(1 개월내 공단접수)                      | 재해발생시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장 3 년 보관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'재발방지대책' 수립 유무(교육 포함)<br>(중량물/특수차량 취급 계획서 등)  | 현장부서(특기팀 등)<br>지역본부 선로지원팀 | 사업장 3 년 보관                 |
| 건강<br>검진       | ○ 건강진단 실시(근로자건강진단결과표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장보관(5 년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2 차 건강진단 실시 유무(대상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장보관(5 년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작업환경측정 실시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맨홀작업등                     | 외부 측정기관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특수건강진단' 실시 유무 (대상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맨홀작업자                     | 외부 검진기관                    |
| 근골<br>격계<br>질환 | ○ 근·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실시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년마다 실시                  | 2013 년<br>조사(예정)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근·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침행사                      | Olleh 체조 등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중량물 취급작업장 '무게중심표지판' 부착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계실 및 창고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호<br>구        | ○ '보호구 지급 대장' 관리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맨홀작업 등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'검정필' 규격 보호구 사용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화/안전모 등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방호             | ○ 사업장 유해·위험기계·기구 방호조치<br>(해당설비 공조실, 사다리, 조속기 등) | 특기팀 등                     | (미끄럼<br>방지판 등)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계단 등 난간대 설치 (높이 1M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사업장 (보유시)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기타 안전기준 준수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해             | ○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 비치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장부서                      | 유류탱크<br>구내식당<br>공조실 등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경고표지판 부착 유무 (유해물질 용기)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MSDS 교육실시 유무 (해당물질 취급자)                       | 자체 정기교육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○ 미 사용물질 방치 (페인트, 세척제 등)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장부서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【붙임 10】구내식당 위생점검표 <식품의약품안전청 지도점검표 준수>

## 구내식당 위생점검표

점검일시: 2015. . . ( )

|   |    |    |     |
|---|----|----|-----|
| 결 | 담당 | 팀장 | ○○장 |
| 재 |    |    |     |

| 구 분           | 위생 점검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검결과<br>(○ / X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급 식<br>종사자    | 개인위생(신체, 두발, 손톱 등) 청결 단정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위생복, 위생모, 위생장갑, 작업화 등 착용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주 방<br>시설설비   | 바닥, 벽, 천장, 하수구 등 청결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방충, 방서, 환풍시설 등 파손 및 청결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수세시설, 소독시설의 구비 및 작동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식 재 료<br>관리상태 | 유효기간 경과 식재료 보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사용잔품 보관방법(밀봉 등) 적절성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식재료 보관, 바닥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보존식 영하 18℃ 이하 144 시간 보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원산지(축산물, 쌀, 김치류) 표시 여부(게시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주방기구<br>관리상태  | 칼, 도마 등은 육류, 어류, 야채류 별도 용도에 따라 색상별 구분 사용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음식 담은 용기의 위생적인 세척 및 보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세척, 소독된 기구는 재 오염되지 않게 보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뒷정리           | 조리실은 청결, 정리정돈 되어 있으며 쓰레기 등 이물질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?<br>(녹 제거, 배기후드, 주방바닥, 홀, 냉장고 보관)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행주, 도마 등 조리기구의 세척 및 소독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안전점검          | 최종 퇴청 시 점등시설, 전열기구 등 off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환기구 및 가스배관, 중간밸브 잠김 확인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전기설비[콘센트 노출(물/젖은 행주), 전선피복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구비서류          | 영업/집단급식소 신고현황, 위생교육증, 영영사자격증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, 정수기 등 소독현황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* 특이사항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